

<p>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의 견</p> <p>1. 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토록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중 서울특별시 세조례와 관련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조정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인하부분을 시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p>2. 개정내용별 검토사항</p> <p>1)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조정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4,8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개인균등할주민세 부과기준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행 4,500원(교육세 1,120원 포함시 5,620원)보다 300원(교육세 증가분 80원 별도)이 증액된 4,800원(교육세 1,200원 포함시 6,000원)으로 정한 것임. ○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자치단체의 비용을 주민이 골고루 분담한다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세대당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加減)할 수 있도록 한 「표준세율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우송료, 인건비 등의 징수경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한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하였는바, ○ 이로써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시에서는 조례로 최대 10,000원까지 세율을 정하여 세수증대(약 186억원)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시한 지나 	<p>친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적(예시: 1999년 6,000원, 2000년 8,000원, 2001년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함이 바람직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의 경우 6,000원(교육세 포함)으로 380원을 인상(인상을 6.8%)하면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주민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4,800원으로 인상 조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인상액을 보면, 1973년에 2,000원으로 도입된 후 1977년 3,000원, 1980년 4,000원, 1994년 4,500원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대하여 ○ 안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부과함에 있어 배기량에 씨씨당 차등세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배기량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씨씨당 세액을 평균 148원(800씨씨 이하 80원, 1,0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000씨씨 초과 220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감소폭을 보면 최저 9%에서 최대 40%까지 전반적으로 대폭 인하한 것으로서 이는 한·미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율 인하정책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영한 것임.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개정전의 지방세법을 반영한 결과 배기량 기준을 7등급으로 하고(800씨씨 이하 ~3,000씨씨 초과), 씨씨당 세액을 평균 219원으로 하였으며(100원 ~370원),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도 높게 책정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변경의 특징은 승용자동차의 「운행과세 강화, 보유과세 완화」라는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한 것임. 이러한 세율인하로 우리 시의 세수감소분은 약 694억원(전국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행('99예산편성 반영) : 5,334억원, 조례개정시 4,640억원
--	--

- '98년 2기분 자가용차량 및 세액 :
1,658,524대 2,802억 3백만원
- 이러한 세수 결손 예상액에 대하여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761억 5백만원을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키고 하고 이미 지난 1월 29일부로 우리 시에 해당금액이 배정 통지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키로 정책협의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배정된 교부금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자금이 지급되고 지방주행세가 예정대로 신설된다면 본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로 시 재정정책운영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율이 현행대로 존치될 경우에는 자동차세 인하를 전제로 지난해 9월 대폭 인상된 교통세[회발유 1ℓ 445원→591원('98.5)→691원('98.9)]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한편, 지방세제에 주행세를 도입, 자동차 보유관리수단인 자동차세와 상호보완을 통해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련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견

1. 개정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6일 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제9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및 추정규정과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한 무역업자의 중고수출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면제규정 등을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운영상의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

- 1)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신설)에 대하여
 - 안 제26조의5(신설)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과 추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

- 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최초 7년은 전액, 이후 3년은 100분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 이는 IMF와 더불어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법인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경우에 국세(법인세·소득세), 시세(취득세·등록세), 자치구세(재산세·종합토지세) 중 일부세목을 감면토록 하고,
- 동조제4항에서는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최초 5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를 감면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부(행정자치부)에서 1998년 12월 30일자로 통보된 준칙(행정자치부 세제13400-334)에 의거 최초 7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후 3년은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보다 많은 투자촉진을 위한 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감면규정의 신설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부가가치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고용창출 중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2) 중고수출차량의 취득세 감면(신설)에 대하여
 - 안 제26조의6(신설)은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서,
 - 현행 조례 제13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